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111500(본소), 2022나133(반소) 판결

[임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111500(본소), 2022나133(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21. 5. 18 선고 2019가소1169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6. 29.

판결선고 2022.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21. 5. 18. 선고 2019가소 11699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0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115,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4,404,65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04,65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8. 1. 급여부터 근로시간과 급여를 조정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고 실지급여는 올려주되,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합의를 무시하고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2018. 1.부터 2019. 2.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 30,400,000원과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합계 23,284,230원의 차액 7,115,7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을 1호증)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1) 을 1,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사원별 집계표’의 실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차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포기 합의를 전제로 위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최리지, 판사 강병하

1)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퇴직금 포기 약정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로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대납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